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2. 6. 22.(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2년 6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5일
- 라. 상정일자 : 2012년 6월 19일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허경재)

가. 제안이유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NGO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NGO센터 기능 (안 제4조)
- 위탁 근거 마련 (안 제5조)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 센터의 운영 (안 제6조 ~ 제10조)
- 위탁운영에 대한 감독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연병호)

금번 제정조례안은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NGO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NGO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NGO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NGO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NGO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금번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 준비 중인 NGO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NGO센터가 설립·운영될 경우 필요한 조례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안에서의 NGO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며 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NGO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NGO”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결성되어 함께하는 충북도정 발전과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민간조직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충청북도NGO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실 소재지는 청주시 관내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NGO 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인프라 및 편의시설 지원
2. NGO의 창립, 자원봉사 안내 등 상담지원
3. NGO 구성원의 소양교육, 활동가 육성 등 교육실시
4.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민간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5. NGO의 균형발전 도모
6.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
7.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숙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8. 기타 NGO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위탁협약 체결)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여부는 위탁기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 받은 운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운영 위원회 설치 · 운영)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자가 구성 ·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는 NGO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기타시설 이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센터의 운영비는 이용료, 운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 승인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자 의무)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자에게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센 터 이 용 료

구 分	기 준	이 용 료		비 고
		기 본	추 加	
회의실 (강당)	평일3시간 이 내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간 초과 이용 : 시간당 20%가산 	냉·난방시설이용시: 이용료의 20%가산
	토·일·공휴일 3시간 이내	70,000원		
기타시설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설립운영 : 2013년 상반기
- 설립규모 : 991m²(300평) 정도
- 참여범위 :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 운영형태 : 건물 확보(임차)하여 위탁운영
- 사업비 : 770백만원
 - 임차료 500, 리모델링100, 인건비 70, 관리비50, 기자재 50

2. 비용 발생 요인

- NGO센터 위탁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 인건비 : 3명(센터장 1, 직원 2명)
 - 관리비 : 센터운영 관리 및 제세비용 등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NGO센터의 건물확보, 리모델링 사업 및 기자재 구입 등 기반시설 확충과 충청북도 NGO센터 운영법인 또는 단체 선정 후 위·수탁협약 체결
-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 위탁운영비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15	'16	총계
계	68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160,000
건물임차료	500,000					500,000
리모델링비	100,000					100,000
기자재구입비	50,000					50,000
인건비	17,500	70,000	70,000	70,000	70,000	297,500
관리비	12,500	50,000	50,000	50,000	50,000	212,500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센터 위탁운영비 당초예산 확보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전문기관 : 충북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용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68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160,000
건물임차료	500,000					500,000
리모델링비	100,000					100,000
기자재구입비	50,000					50,000
민간위탁금	3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10,000
인건비	17,500	70,000	70,000	70,000	70,000	297,500
관리비	12,500	50,000	50,000	50,000	50,000	212,500
재원 조달	68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16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도 비	68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160,00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 · 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